

브리티시컬럼비아 대회(Synod of British Columbia)

상설 규정(Standing Orders) 2024년 10월 개정

서문(Preamble)

브리티시컬럼비아 대회는 캐나다 장로회(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) 총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, 특히 *양식서(Book of Forms)* 제7장을 중심으로 그 규정을 따릅니다. 대회의 업무 절차는 *양식서* 제2장에 있는 교회 치리회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. *양식서* 제27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. “대회(Synod)는 자체 상설 규정을 제정할 완전한 권한을 가지며, 치리회의 판단에 따라 그때그때 업무를 정리할 수 있다.”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회는 아래에 기술된 구조적·절차적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.

실행위원회(Executive Committee) 구성

- 대회장(Moderator) — 대회 폐회 시점부터 실행위원장 역할 수행
- 직전 대회장(Past Moderator)
- 서기(Clerk)
- 대회 재정관리자/회계(Synod Financial Manager/Treasurer)
- 전국여전도회 회장 또는 대표(Synodical President or Representative)
- 각 노회에서 파송한 대표 1인

실행위원회 책임(Responsibilities)

- 의미 있고, 예배적이며, 교육적이고, 일치를 증진하는 대회를 계획한다.
- 정기 대회 사이에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회의 업무를 지원·감독·수행한다.
- 대회에 보고서 및 권고안을 제출한다.
- 대회의 예산 초안을 검토한다.

- 보조금/대출 요청을 검토 및 승인한다.
- 평신도 지도력을 위한 예비 자료가 매년 준비되어 대회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.
-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.

대회 회기 중 책임(Responsibilities at Synod)

- 각 노회의 회의록 검토를 주선한다.
- 감사의 표현을 준비한다.

지명위원회(Nominating Committee)

구성(Composition)

- 직전 대회장(Past Moderator, 소집자)
- 대회장(Moderator)
- 서기(Clerk)

책임(Responsibilities)

- 다음 직책에 대한 후보를 추천한다:
 - 대회장(Moderator)
 - 서기(Clerk)
 - 재정관리자(Financial Manager)
 - 투자 자문(Investment Advisor)
 - 감사(Auditor)
- 실행위원회 보고를 통해 대회에 보고한다.

- 필요하거나 요청되는 기타 모든 지명을 담당한다.

상설 규정(Standing Orders)

1.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회의 정기 회의는 통상 10월 셋째 주말에 개최한다. 첫 회기에는 대회장 취임, 예산 발표, 예배로 마무리하는 순서를 포함한다. 대회는 가능하면 성찬식을 포함한 예배로 폐회한다.
2. 대회는 격년으로 웨스트민스터 노회 관할 지역에서 개최하며, 그 외 해에는 다음 노회들이 순환하여 개최한다: 밴쿠버아일랜드 노회, 캠룹스 노회, 쿠트니 노회, 서부 한카노회(Western Han-Ca Presbytery).
3. 대회장 선거는 개회 회기에서 실시한다. 대회장 후보는 순환 노회에서 추천한다(예: 밴쿠버아일랜드, 웨스트민스터, 캠룹스, 쿠트니, 서부 한카 노회). 회의 중 현장에서 추가 지명도 가능하다.
4. 실행위원회는 첫 회기에서 실행위원회 보고가 제출되도록 업무를 조직한다. 두 번째 회기에서는 보고서와 권고안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한다.
5. 재정관리자/회계의 보고서는 대회 개회 15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되어 검토 후 배포 준비가 되어야 한다.
6. 지명위원회의 보고서도 대회 개회 15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되어 배포 준비가 되어야 한다.
7. 대회 재정 지출을 요구하는 모든 안건은 8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, 재정관리자 검토 후 실행위원회에서 다룬다.
8. 사전 인쇄되지 않은 구두 보고나 위원회 보고는 치리회의 허락이 있어야만 접수된다. 이러한 보고를 접수하려면 개회 회기에서 안건 채택 전에 동의를 제기되어야 한다.
9. 각 노회의 명부와 회의록은 대회 개회 전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0. 대회 회기 중 발언할 초청 손님이 있을 경우, 개회 15일 전에 서기에게 통보해야 한다.
11. 총회에서 이첩된 안건은 실행위원회가 검토하여 두 번째 회기에서 보고한다. 총회 이첩 안건에 대한 대회 응답은 실행위원회가 작성하여 대회의 승인을 받으며, 이는 실행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다.
12. 대회 프로그램 및 관련 비용은 대회의 책임이다.
13. 대회 참석을 위한 합리적인 여행 경비는 상설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.
14. 차량 이동 경비는 해당 연도의 CRA(캐나다 국세청)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15. 서기 사례비는 매년 PCC-COLA(캐나다 장로회 생활비 조정)에 따라 조정한다.